



제 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정문화유산 훼손 방지를 위한 사전 교육 실시 〉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25호)

2025.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지정문화유산 훼손 방지를 위한 사전 교육 실시(안 제36조제1항제4호 및 제81조의2 신설)	2
※ 참고자료	1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재원 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3. 4.

다. 회 부 일 : 2025. 3.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가 사적으로 등재된 안동 병산서원에서 드라마 촬영 중 못질을 해 국가유산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함.

현행법은 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가유산청장,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허가 시 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지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유산에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교육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국가유산청장 등은 행위 허가를 받는 자를 대상으로 지정문화유산의 중요성과 보존 필요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교육 이수한 자에 대해 행위 허가를 허용함으로써, 지정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4호 및 제81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지정문화유산 훼손 방지를 위한 사전 교육 실시(안 제36조제1항 제4호 및 제81조의2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정문화유산의 중요성과 보존 필요성에 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행위 허가를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4호 및 제81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6조(허가기준) ①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제36조(허가기준) ①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u>4.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u>
	<u>관련된 교육을 받을 것</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1조의2(지정문화유산의 허가와 관련된 교육)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5조제1항 본문(제47조 및 제7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는 자를 대상으로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의 중요성이나 보존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기, 이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수리·정비·복구, 시설물의 신축·증축·개축·이축·용도변경, 토지 매립 등의 행위 뿐만 아니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소음·진동·악취 유발,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 등의 행위 및 국가지정문화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¹⁾.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허가사항) ①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 다만,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 내에서 안내판·경고판 설치 및 지정구역 등에서의 보호 울타리 설치, 수목 가지 고르기, 병충해 방제, 촬영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²⁾.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 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7조(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임시지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 제37조, 제39조, 제40조제1항(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한정한다), 제40조제2항, 제42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제74조(준용규정) ①시·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②시·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의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제4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49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허가절차) ①법 제35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 ②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유산청장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2. 국유인 문화유산으로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으로 한정한다)의 현상변경 행위
3.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삭제
3.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가.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移築) 또는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땅파기·구멍뚫기, 땅깍기,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汚水)·분뇨·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②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 행위

마.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삭제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유산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③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다른 장소로 옮겨 촬영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표면에 촬영 장비를 접촉하여 촬영하는 행위

3. 빛 또는 열 등이 지나치게 방출되어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4. 그 밖에 촬영 장비의 충돌·추락 등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물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 행위)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3.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다.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규모의 신축, 개축(改築) 또는 증축 행위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마. 표지돌,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바. 보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

사. 수목의 가지 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 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관리

○ 현행 법령상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현상변경 등에 대한 허가 사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음.

-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촬영행위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사항이고, 그 외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촬영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사항임.

[현상변경 등의 허가 사항]

국가유산청장 허가사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허가사항
【근거법령】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본문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근거법령】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①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 행위 1.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삭제 3.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移築) 또는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땅파기·구멍뚫기, 땅깎기,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1. 삭제 2.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3.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다.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규모의 신축, 개축(改築) 또는 증축 행위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마. 표지돌,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바. 보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

아. 학술·연구 목적이거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묘목을 채취하는 행위

4.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2항의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5.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행위 중 국가지정문화유산(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촬영행위

국가유산청장 허가사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허가사항
마.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汚水)·분뇨·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사. 수목의 가지 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관리 아. 학술·연구 목적이거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묘목을 채취하는 행위
②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 행위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목의 행위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 행위 마.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삭제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유산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2항의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국가유산청장 허가사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허가사항
③국가지정문화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 행위 1.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다른 장소로 옮겨 촬영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표면에 촬영 장비를 접촉하여 촬영하는 행위 3. 빛 또는 열 등이 지나치게 방출되어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4. 그 밖에 촬영 장비의 충돌·추락 등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물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행위 중 국가지정문화유산(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촬영 행위

- 그런데 최근 한 방송국의 드라마 촬영 중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인 안동 병산서원이 다수의 못질로 인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함. 이에 따라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또는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에게 문화유산의 중요성과 보존 필요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문화유산의 역사성과 가치, 존엄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문화유산의 훼손을 예방하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심사시 다음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행법 제36조제1항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 신청 시 해당 행위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며, 문화유산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³⁾.
- 안 제36조제1항제4호는 허가 신청자가 사전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허가 신청을 위한 별도의 심사 기준이 추가된 것으로 해석되며, 개정안에 따른 문화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임.
- 한편, 유사 입법례를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및 「식품위생법」 제41조는 특정 업종에 종사하려는 자에게 관련 교육의 이수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지만, 이들 규정은 교육을 허가 또는 등록의 사전 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의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한 후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6조(허가기준) ①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

②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은 등록 이 후에 이행해야 하는 사후적 의무에 해당함.

-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은 원칙적으로 영업을 하려는 자가 사전에 식품위생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 시작 후에도 교육 이수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교육 이수는 허가 요건이 아닌 영업 개시 전후 일정 시점 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로 해석할 수 있음.

[유사 입법례 현황]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의3(건설업의 교육) ①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외의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제84조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기준·절차 및 교육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종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⑧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이에 따라, 사전 교육 의무 이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6조제1항 제4호로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경우 안 제81조의2를 제36조의2로 이동하여 사전 교육 실시 내용을 규정)과 함께 유사입법례를 참고하여 지정문화유산 허가 관련 교육을 사후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안 제36조의2⁴⁾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허가 신청 이전에 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경우 허가 신청인의 부담이 과도하게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허가 신청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허가 신청 시점 이전이 아닌 허가 이후 실제 촬영 또는 현상변경 행위 시행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

4) 조문 위치는 제11장(보칙)에 두기보다는 제4장(국가지정문화유산) 제2절(보존·관리 및 활용)에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도록 조건부 허가제도를 규정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현행법 제36조의 허가기준 규정에 허가와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 신설로 볼 수 있으므로 수용하기 곤란함. 다만, 사전 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허가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 둘째, 안 제81조의2에서 규정한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허가 관련 교육은 그 대상을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지정문화유산으로 한정’하고 ‘촬영행위 허가’에 관한 사전 교육으로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교육의 내용, 시기 이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 적절함.
- 넷째, 법 조항의 체계성을 고려할 때 안 제81조의2를 법률 제11장의 보칙에 두기보다는 제35조의2로 신설하는 것이 적절함.
- 다섯째, 현행법 제47조 및 제74조제2항의 준용규정에 허가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의견 중 교육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정문화유산으로 한정하는 경우, 국가유산청이 관리하는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은 사전 교육 대상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어 보임. 따라서 교육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심사 시 이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79

참고1

관련 통계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허가하는 현상변경 등 허가 건수

(단위 : 건)

허가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허가건수	1,670	1,805	1,750	1,707	1,558	8,490

※ 출처 : 통계로 보는 국가유산 2024 p.68 통계표

참고2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 KBS 드라마 촬영 중 안동 병산서원 훼손 사건을 계기로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을 수립(국가유산청, 2025.3.6.)
 - 상기 가이드라인 내용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촬영 허가 시 동 가이드라인을 사전 교육(안내)자료로 활용토록 규정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2025. 3. 6. 제정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과

I. 총론

- (제정 목적)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방송국 드라마 촬영 중 국가지정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 훼손 사례를 계기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유산 내 촬영 행위 허가에 관한 유의사항 등을 공유하고자 수립되었다.

- (적용 범위) 동 가이드라인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 제35조제1항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의5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는 문화유산 내 촬영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 (대상 행위) 동 가이드라인은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촬영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 (추가 지침) 동 가이드라인 이외, 해당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에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동 가이드라인에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타법 허가) 드론 촬영 등 타 법에 의한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를 득한 후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다.
- (기타 사항) 문화유산 내 촬영 행위에 관해 동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문화유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 (지침 준용) 시·도지정문화유산 대상 촬영 허가 또는 관련 지침 마련 시, 동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다.

II. 촬영 개시 전

II-1. 촬영 허가 신청

- (제출 서식) 문화유산 내 촬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촬영 개시 15일 전까지 문화유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허가신청서와 행위 계획서 및 서약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전 협의)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는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협의 후 촬영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촬영 계획)** 행위 계획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촬영명, 촬영 대상(장소), 촬영 목적, 촬영 일시, 세부일정별 촬영내용, 촬영 중 문화유산 훼손 예방을 위한 대책, 관람동선 확보 및 안전대책, 촬영을 위해 입장하는 인원, 촬영 장비 반입 목록
- **(촬영 일시)** 촬영 행위 계획서 상에 일자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촬영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집중촬영시간**)을 **별도** 명시한다.
- **(촬영 목적)** 촬영 행위는 해당 문화유산의 역사성과 가치,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하며,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역사적 사실 촬영의 경우 고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고증 미비의 경우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안전 요원)** 문화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촬영 행위 전체 과정의 관리 감독을 전담으로 하는 안전 요원(**전담 안전 요원**)을 둘 수 있다. 단, 영화, 드라마 등 상업적 촬영 또는 촬영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에 전담 안전 요원을 1인 이상 선정,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 요원의 자격은 문화유산(건축, 조경, 역사, 고고학 등) 전공자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유산 해설사로 한다.

II-2. 촬영 허가

- **(허가 조건)** 촬영 허가 시 아래 조건을 추가한다. 해당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 시 아래 조건 외에 허가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 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 내 별도 시설물 설치와 문화유산 훼손행위 등 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촬영은 문화유산의 안전과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 한한다.
 - 촬영 시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 화기 사용을 금하고, 문화유산 화재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촬영 허가 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드론 촬영) 드론의 이·착륙 장소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사전 협의를 얻은 장소에서 운영해야 하며, 문화유산 내 드론의 이·착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문화유산에서 최대한 이격하여 촬영을 한다.

II-3. 촬영 허가 통지

- (사전 교육 또는 사전 안내) 촬영 개시 전 촬영 허가를 받은 자에게 동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여 사전 교육 또는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III. 촬영 중

- (행위 금지) 문화유산 내 촬영을 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금지한다.
 - 촬영을 위해 무대장치 등 별도 시설물을 설치·가공하거나 문화유산에 소품을 걸거나 부착하는 행위, 문화유산 표면을 닦는 행위, 문화유산에 물·알콜 등 액체를 뿌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 문화유산 내 목조 건축물의 기둥 등 목부재에 못을 박는 행위와 기단 및 석축에 철물(못 등) 설치 행위를 금지한다.
 - 박석(薄石 : 평평한 돌)에 발전차, 크레인 등 대형 촬영 장비를 반입할 수 없으며, 촬영을 위한 장비를 보관할 수 없다. 소형 촬영장비는 충분한 안전장치 구비 후 반입한다.
 - 장비 및 소품은 건물 등과 1m 이상 떨어져 사용 및 보관하여야 한다.
 -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에 근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출입제한구역을 포함하여, 촬영 장소가 아닌 문화유산 및 부속 시설물, 화계(花階)에 출입하거나 주변의 식물 및 시설물을 만지지 않는다.
 - 문화유산 내에서 요리, 식사, 음주가무를 금지한다.

- **(반입 불가)** 아래 사항은 반입 불가하며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 화재 및 폭발 우려가 있는 물품(담배,ライター, 가스통 등 인화물질)
 - 문화유산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품 및 물품
 - 허가받지 않은 차량과 촬영 소품용 차, 우마차, 마필 등 기타 동물 등
 - 인공비, 인공눈, 인공안개 등 관련 소품
- **(준수 사항)** 문화유산 내 촬영을 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 문화유산 내 건물 또는 식물 등 자연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
 - 촬영 시 질서 유지 및 주변 청결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촬영 중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 항공 촬영 시 드론 상태 확인과 정비에 각별히 유의한다.
 - 화재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촬영 종료와 동시에 모든 촬영 장비를 즉시 철거하고 청소 등 주변 정리를 철저히 한다.
- **(관람객 보호)** 관람객 안전과 원활한 관람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 관람객 이동 동선 밖에서 촬영을 원칙으로 한다.
 - 차단봉 등 이동식 경계라인을 표시한다.
 - 필요 시 전담 안전 요원이 관람객 안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행위 보완)** 세부사항은 허가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고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촬영 과정에서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제재가 있는 경우는 지시 내용을 보완하여 촬영을 개시한다.
- **(현장 입회)** 문화유산 촬영 시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입회하여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한다. 특히 중점 촬영시간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입회 하에 촬영을 실시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

청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유산 해설사에게 현장 입회를 의뢰할 수 있다.

- **(허가사항 취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촬영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법 제37조에 따라 허가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IV. 촬영 종료 후

- **(현장 확인)** 촬영 종료 후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의 현장 확인을 해야 한다.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 확인에 앞서 필요한 경우 촬영 허가를 받은 자에게 **촬영 종료 후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유산 해설사 또는 지역 문화유산 돌봄단체에 현장 확인의 협조를 의뢰(요청)할 수 있다.
- **(행정명령)** 촬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문화유산의 훼손 사례가 발생한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유산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해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를 명한다.
- **(처벌 조항)** 촬영 행위로 인한 문화유산 훼손 시에는 문화유산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또는 같은 법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를 적용한다.